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3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유종오 · 정혜경 · 임미애

황운하 • 한창민 • 전종덕

이용우 • 박수현 • 박은정

정태호 · 김준혁 · 염태영

복기왕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음. 그럼에 도 불구하고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 관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 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임.

이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및 매립에 관한 법률」・「항공안전법」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와 금지 통고 등) ① 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서를 전단등을 살포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자에게 24시 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통일부장관은 전단등 살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할 것을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금지 통고 사실 및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남북관계의 긴장 정도를 고려할 때 전단등 살포를 이유로 한 북한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일어나거나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2. 전단등 살포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이루어져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남북합의서에서 정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접경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 5. 전단등 살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위반하거나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 및 제5항・제123조제1항 · 제124조・제1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6.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단등 살포 신고 내용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금지 통고된 전단등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전단등의 살포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

- 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제24조의3(전단등 살포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일 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내주고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통일부장관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전단등을 살포할 수 있다.
- 제24조의4(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 관할경찰 관서장은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자가 전단등 살 포를 시도할 경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은 전단등 살포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단등을 살 포한 자
-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살포 금지 통고가 되었음에도 전단등을 살포한 자
- 4. 제24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	금지) ①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	
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	
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	
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3. 전단등 살포</u>	<u><삭 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4조의2(전단등 살포 신고와
	금지 통고 등) ① 전단등 살포
	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적은 신고
	서를 전단등을 살포하기 720시
	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통일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
	<u>시 내주어야 한다.</u>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

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 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통일부장관은 전단등 살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전단등 살포를 금지할 것을 신고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지체 없이 금지 통고 사실 및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한다.

- 1. 남북관계의 긴장 정도를 고 려할 때 전단등 살포를 이유 로 한 북한의 행위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 이 일어나거나 사생활의 평온 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경 우
- 2. 전단등 살포가 다른 사람의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

- 소에서 이루어져 사생활의 평 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남북합의서에서 정한 정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제23조제2항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전단등 살포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접경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 오
- 5. 전단등 살포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위반하거나 「항공안 전법」 제122조제1항 및 제5 항・제123조제1항・제124조・제1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7조제2항 및 제3항, 제12 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6.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단등 살포 신고 내용의 준수를 확인하거나 금지 통고 된 전단등 살포를 제지하기 위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경찰서장(전단등의 살포 장소 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 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경찰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 다.

제24조의3(전단등 살포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 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접수 일시 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 에게 내주고 접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 <신 설>

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통일부장관 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전단등을 살포할 수있다.

제24조의4(전단등 살포를 하려는 자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 관 할경찰관서장은 제24조의2제3 항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자가 전단등 살포를 시도할 경 우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 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은 전단등 살포 참가자는 지 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5조(벌칙) ① 제24조제1항을 기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u><신 설></u> ② (생 략)

제25조(벌칙) ① <u>다음 각호의 어</u>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u>
1.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를 위반한 자
2.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단
등을 살포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살포

등을 살포한 자

② (현행과 같음)

금지 통고가 되었음에도 전단

4. 제24조의4제2항을 위반한 자